제 1255 호
1986. 3.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편집인 : 공 보 관 이 광 우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계	보도계장	공보계장	공보관

공람 월 일

시 보

차 례

◎ 규 칙

교육규칙제 301 호 :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 중개정규칙 3

◎ 훈 령

제 639 호 : 서울특별시울림픽경기대운영규정 5

◎ 고 시

제 136 호 :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내용중면적정정 14

제 13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4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3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5
제 139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30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 15
제 140 호 :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변경 …… 16
제 14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정정 …… 16

◎ 공 고
제 147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업체실효처분 ……17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 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3.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열 곤

◎ 교육규칙제 301 호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공립의 학교와 사립의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사립의 국민학교 및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수 있다.

제 4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교육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원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 학교별	년기 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구	비고
대학(공립)	년	287,000	80,000	1급지	6개월을 1기로 징수함. 대학원은 대학과 동액이나 도시행정대학원은 년 230,000 원임
	기	143,500			
고등학교 (공·사립)	년	302,400	6,800	〃	3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75,600			
각종학교(고)	년	287,200	6,400	〃	〃
	기	71,800			
특수학교(고)	년	302,400	6,800	〃	〃
	기	75,600			
고등기술학교(고)	년	287,200	6,400	〃	〃
	기	71,800			

구분 / 학교별	년기 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구	비고
방송통신고등학교	년	45,640	2,940	1급지	6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22,820			
중학교(공·사립)	년	175,200	5,700	〃	3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43,800			
각종학교(중) 일반	년	175,200	5,700	〃	〃
	기	43,800			
각종학교(중) 예능	년	216,400			
	기	54,100			
특수학교(중)	년	175,200	5,700	〃	〃
	기	43,800			
기술학교(중)	년	157,600	3,400	〃	〃
	기	39,400			
고등공민학교	년	105,240	3,400	〃	〃
	기	26,310			

(별표 2) 공·사립학교수업료분할징수표 (단위 : 원)

기별 / 학교별	1기 (3.1 - 8.31)	2기 (9.1 - 익년 2월)
대학(공립)	143,500	143,500
방송통신고등학교	22,820	22,820

기별 / 학교별	1기 (3.1-5.31)	2기 (6.1-8.31)	3기 (9.1-11.30)	4기 (12.1 -익년2월)
고등학교(공·사립 인문·실업)	75,600	75,600	75,600	75,600
각종학교(고)	71,800	71,800	71,800	71,800
특수학교(고)	75,600	75,600	75,600	75,600
고등기술학교(고)	71,800	71,800	71,800	71,800
중학교(공·사립)	43,800	43,800	43,800	43,800
각종학교(중) 일반	43,800	43,800	43,300	43,800
각종학교(중) 예능	54,100	54,100	54,100	54,100
특수학교(중)	43,800	43,800	43,80	43,800
기술학교(중)	39,400	39,400	39,400	39,400
고등공민학교	26,310	26,310	26,310	26,310

비 고

1. 이표에서 "인문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하고 "실업계"라 함은 다음의 학과를 전공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가. 대학(대학원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의 각학과(다만,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를 제외한다)와 기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과
   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 각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라함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말한다.
   다만,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훈 령

서울특별시 올림픽경비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 훈령 제 639 호

서울특별시올림픽경비대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올림픽경비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올림픽경비대(이하 "경비대"라 칭한다)의 기능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과 관련, 예상되는 각종 경비사태의 예방과 경기장 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경비대운영과 대원(경찰관 및 의무경찰순경)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경비대의 대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투경찰대 운영규정 및 경찰기동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편제 및 임무

제 3 조(편제) 경비대에는 경비대본부와 중대로 편성한다.
   1. 본부에는 행정계와 경비교육계를 둔다.
   2. 각 중대는 4개 소대로 편성한다.
   3. 소대는 4개분대로 편성한다.
   4. 분대는 10명으로 편성하고 분대장은 의무경찰순경중 선임자로 한다.
   5. 경비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임무) 경비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올림픽경기장과 관련 시설의 경비 및 방호
2. 기타 경찰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 3 장 지휘감독 및 근무

제 5 조 (지휘체제) ①경비대의 근무 지휘는 다음 체제에 의한다.

1. 경찰국장
   경비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총 지휘 감독한다.
2. 제 2 담당관
   경찰국장을 보좌하여 경비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지휘 감독한다.
3. 경비과장
   경찰국장을 보좌하여 경비대의 조직, 훈련 및 보급등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4. 경비대장
   경찰국장명에 의하여 직접 대원을 지휘 감독하며 대원의 복무, 인사 관리 및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경비대의 지휘 감독 한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감독 및 책임	분 대 장	소 대 장	중 대 장	경 비 대 장

제 6 조 (평상시근무) 별표 2 의 일과표 및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단, 부여된 임무에 따라 경비대장은 일과표 및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비상시근무) 올림픽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등에서 행사나 다중범죄, 재해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장의 명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복 무

제 8 조 (복무기간) 경비대의 지휘요원 및 대원의 복무기간은 별도 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 9 조 (복장) ①경비대원은 주간근무복, 야간에는 전투복을 착용하되 상황에 따라 지시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경비대원은 별표 3 의 올림픽경비대 견장을 좌측어깨 재봉선에서 3 ㎝ 떨어진 곳에 부착한다.

③경비대원은 경비근무시 경위이상은 금색견사, 경위이하는 백색견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위이상은 의전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④경비대원은 근무복 하의 양측재봉선에 경위이상은 금색, 경사이하는 백색띠를 부착하며 하단에 링을 넣는등 단정히 한다.

제 10 조 (합숙) ①경비대원중 의무경찰순경은 숙영시설내에서 합숙,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관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②외박자는 유사시 2 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한다.

③대원의 휴가, 외출 면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④의무경찰순경에 대한 청원휴가, 외박, 외출, 면회는 중대장에 의임할수 있다.

제 11 조 (당직) ①경비대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당직관을 편성 운용한다.

1. 경비대 본부에는 당직관을 중대장 (경감급) 으로 하고 부 당직관 (소대장급) 과 당직부관 및 당직원으로 한다.
2. 각 중대는 당직관을 소대장으로 하고 당직부관 및 당직원으로한다.

②당직관과 부당직관등은 전투복 및 별표 4 의 완장을 착용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시설 경비상황 조치
2. 인원장비의 파악
3. 긴급상황 발생시 부대출동 지휘
4. 대원의 기강확립
5. 화재도난방지와 자체경비
6. 환경정리 및 위생관리
7. 일과표에 의한 근무감독
8. 외박, 외출, 면회관리
9. 기타 지휘관이 지시한 사항

③당직은 평일에는 일과후부터 다음날 일과 개시전까지 근무하며, 일요일 (공휴일) 은 09:00 부터 다음날 09:00 까지 근무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별표 5 에 의한 근무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근무시간) ①당직 및 대기근무자를 제외한 경찰관의 근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②경비대장은 필요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근무수칙) 경비대장은 경비대 운영에 필요한 근무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규율확립) 경비대는 평소 규율을 생명으로 삼고 불시 상황에 대비 즉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 5 장 장 비

제 15 조 (장비) 경비대장은 지급된 각종장비 및 제차량을 관리 유지한다.

제 16 조 (총기) 경비대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수 있다.

1. 권총 (3.8 구경) : 소대장급 이상
2. 엠 16 소총 : 전 대원

제 17 조 (통신기기) 소대장급 이상 또는 각초소 근무자는 규정된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제 18 조 (장비점검 및 정비) 경비대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전 보유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

1. 중대 : 일일, 주간점검 정비
2. 경비대본부 : 월간 점검정비

제 6 장 기 타

제 19 조 (게시물통제) 경비대본부 및 중대청사 게시물은 경찰관서 게시물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올림픽경비대편제표

〈경비대〉

( ) 의무경찰

44/1,450(1,362)

본 부 4/26(10)

40/1,424(1,352)

행정계 3/17(7)

교육계 1/9(3)

〈중 대〉

5/178(169)

1/10(5)

1/42(41)

1
2
3
4

(10)

1
2
3
4

<별표 2>

일　　과　　표

시　　간	일　　과
06:00	기　상
06:00 ~ 06:20 (20분)	일조점호
06:20 ~ 07:00 (40분)	조기구보 (4㎞) 및 무술훈련
07:00 ~ 07:30 (30분)	아침청소
07:30 ~ 08:30 (60분)	조　식
08:30 ~ 09:00 (30분)	주간근무 지정 및 교육준비
09:00 ~ 12:00 (3시간)	오전일과
12:00 ~ 13:00 (1시간)	중　식
13:00 ~ 17:00 (4시간)	오후일과
17:00 ~ 18:00 (1시간)	장비수입
18:00 ~ 19:00 (1시간)	석　식
19:00 ~ 20:00 (1시간)	휴　식
20:00 ~ 21:00 (1시간)	일석점호준비
21:00 ~ 22:00 (1시간)	일석점호
22:00 ~	취　침

<별표 3>

경 비 대 원 표 시

1) 크 기
- o 가로 77 ㎝, 세로 10.5 ㎝

2) 색
- o 녹색바탕, 백색띠
- o 서울경찰 : 곤색바탕, 백색글씨
- o 경찰마크 : 황색
- o 무 궁 화 : 연분홍색 태극마크
- o 월계수잎 : 황색
- o 오륜마크
- o 올림픽경비대 : 황색글씨

<별표 4>

당 직 근 무 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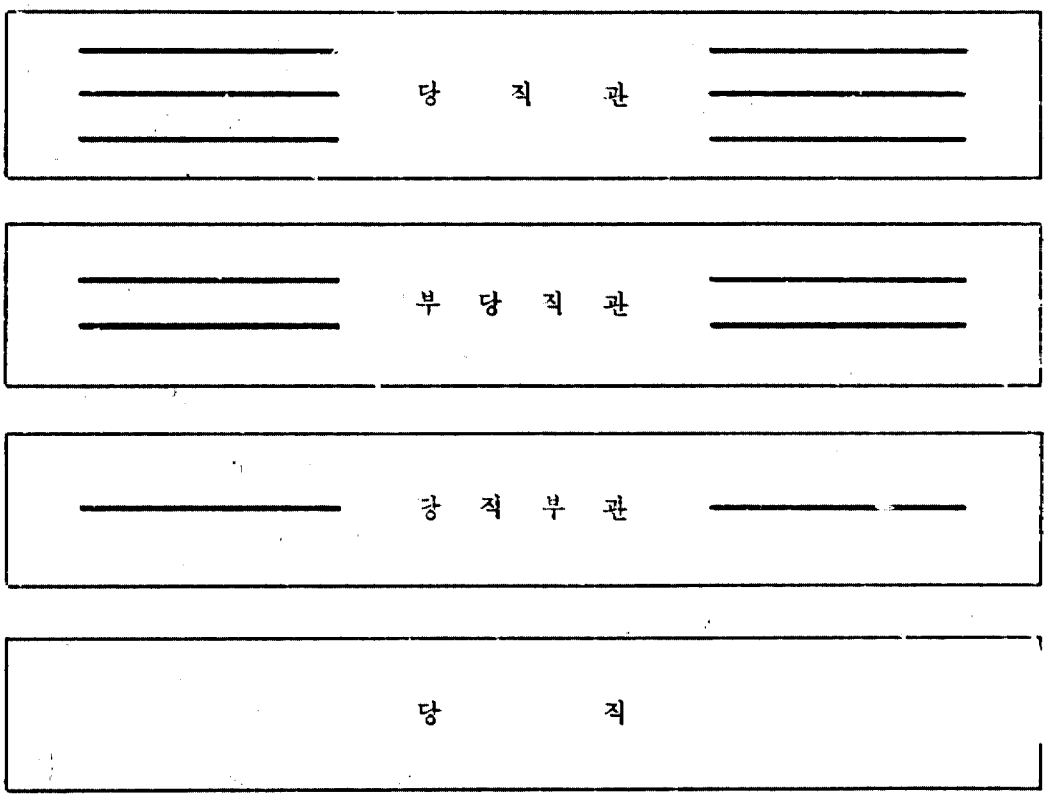

1) 크 기

o 가로 40 ㎝, 세로 10 ㎝

2) 색

o 바탕 : 초록색

o 띠 : 적색

o 글씨 : 황색

19-12 제 1255 호 A1 1986.3.6

< 별표 5 >

근 무 일 지

198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부 관	당직관	중대장

근 무 자

당 직 관				당직부관			
당 직 원				당 직 원			
당 직 원				당 직 원			

인 원 현 황

구분 / 대별	총원			사고			현원			사고내용								
	계	경찰	의경	계	경찰	의경	계	경찰	의경	년가	휴가	병가	입원	교육	휴직	파견	영창	기타
총 계																		
본 부																		
1 소대																		
2 소대																		
3 소대																		
5 소대																		

지 시 및 특 이 내 용

근 무 상 황

근무시간	근 무 장 소	근무인원	근 무 내 용	비 고

항 목	시 간	취 급 사 항	비 고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내용중면적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 512 호(85.11.22)로 도시계획결정(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된 상계 4 구역에 대한 결정고시내용중 구역변경이 없는 면적의 정정이 필요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 조 및 제 8 조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1 호,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청 주택과에서 일반인에게 공람한다.

1986. 3. 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 결정고시내용의 정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구 역 면 적 (㎡)		비 고
		당 초	정 정	
주택개량재개발 상계 4 구역	도봉구상계동 173 번지 일원	18,116	80,116	기타고시내용 및 도면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13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 류 63 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항 및 제 6 조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3. 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63	30-65	4,100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대 2-30)	장충동 200의 1 번지외 3개소
변경	대로	2	63	30-65	4,100	〃	〃	위치 변경

나.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3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 3. 6.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주)청원주택건설
   대표이사 이영보
3. 사업시행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강동구풍납동 179-1
   나. 대지면적 : 2,015.65 ㎡
   다. 용　도 : 연립주택
   라. 규　모 : 3층 2동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건축연면적 : 3,016.20 ㎡
4. 사업시행기간 : 86.3-87.3

첨부 : 1)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39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30 지구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76 호 (84.8. 10)로 사업 시행인가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30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 인가 (시행기간연장) 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6. 3. 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인가내용
   ㅇ 시행기간
      기정 : 84.8.10 - 86.2.28
      변경 : 84.8.10 - 88.2.28
나. 변경사유
   토지매수협의 지원 및 건축공사 착공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시행기간 연기
다. 기타사항 :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

◎서울특별시고시제 140 호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적승인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542호(85.12.9)로 구역 지정되고, 서고시 제30호(86.1.14)로 지적승인된 천호제2 및 천호제3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변경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강동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3. 7.
서 울 특 별 시 장

아 래

구역명	위치	면적(평방미터)		비고
		변경전	변경후	
천호2구역	강동구천호동410번지일대	8,851	8,851	도면변경
천호3구역	〃	7,347	7,347	〃

*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331호(85.5.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중 다음 사항을 정정한다.

1986. 3. 8.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오	신설	관악구신림동산105-11호	5,000	
정	〃	〃	6,345	

(도면 변경없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7 호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업체실효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에 대하여 실효처분 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6. 3. 6.

서 울 특 별 시 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	사유
제 1228 호	서원전업사	삼전동 250-8	이 창 하	면허실효 처분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 (공사업 폐지)

사　　령

◎ 1986 년 3 월 6 일자　　령제 9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홍 중 기	운 영 과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백 위 준	〃	농축과	〃
강 광 일	〃	운수 2 과	지방행정주사보
유 호 열	〃	마포구환경과	〃
김 재 동	〃	시민과	지방행정서기
유 성 찬	〃	성북구수도관리과	〃

령제 9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 갑 석	기계기원	수원기전과	지방기계기원
박 병 원	〃	중 구	〃
이 근 보	기계기원보	도 봉 구	지방기계기원보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조 남 정	기계기원보	영등포구	지방기계기원보
김 정 호	농림기원	은평구	지방농림기원
황 인 구	농림기원보	〃	지방농림기원보
양 종 수	〃	〃	〃
엄 태 진	지방농림기원보	〃	농림기원보
김 남 식	〃	도봉구	〃
박 갑 동	농림기원보	〃	지방농림기원보
오 대 근	〃	마포구	〃
윤 봉 섭	〃	영등포구	〃
강 성 두	〃	강남구	〃
이 해 용	〃	〃	〃
장 경 호	〃	강서구	〃
김 규 환	지방농림기원보	〃	농림기원보

◎ 1986 년 3 월 4 일자 령제 9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상 경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서 울 특 별 시 장

령제 9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성 인	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임 욱 기	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신 면 호	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 기 성	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이 상 경	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

대 통 령

◎ 1986 년 3 월 8 일자　　령제 10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용 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 공 과	지방전기기사보

서 울 특 별 시 장